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2527호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급식비)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 예탁금 원금의 일부 회수를 통해 여유자금(예치금)을 확보하여 하반기 체육 진흥 관련 긴급한 사업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고자 함.

〈표 2-1〉 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항목	현행 (A)	변경계획 (B)	증·감 (B-A)
계	9,936,376	13,936,376	4,0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05,638	13,905,638	4,000,000
예치금회수	2,331,203	2,331,203	-
기타회계전입금	6,740,155	6,740,155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0	4,000,000	4,000,000
예탁금이자수입	834,280	834,280	-

〈표 2-2〉 체육진흥기금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정책사업	현행 (A)	변경계획 (B)	증·감 (B-A)
계	9,936,376	13,936,376	4,000,00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6,645,444	6,645,444	-
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	2,357,008	2,860,888	503,888
기본경비	10,000	10,000	-
보전지출 (여유자금예치)	923,924	4,420,044	3,496,120

3. 검토의견¹⁾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40억원을 회수하여 정책사업인 ①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에 현행(23억 5,700만원)보다 5억 400만원 증액된 28억 6,1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②여유자금을 동 기금에 예치하여 하반기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9억 2,400만원)보다 34억 9,600만원 증액된 44억 2,200만원을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²⁾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①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현행보다 21.4% 증가되고, ②여유자금 예치도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현행보다 378.4% 증가되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 ①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의 경우,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323명에게 급식비를 지원³⁾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휴일에 발생하는 각종 생활체육의 대외지원에 대한 휴일근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으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130천원×323명×12개월=503,880천원

(※ 검토보고서의 본문은 ‘백만원 이하 절사’하여 실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일부 차이 있음)

무 보상 성격 및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증액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의 경우, 지난 2월,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동 세부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을 당초계획(20억 2,300만원)보다 41.4%, 8억 3,800만원 증액한 28억 6,1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⁴⁾

〈표 2-3〉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지출계획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당 초	1 차 변 경 (‘18. 2. 8 심의)			2 차 변 경 (‘18. 3.13 심의)			3 차 변 경 (안) (‘18. 5.11 심의, 의회안건 제출)			
	2,023	2,860	증가액 ^{주1)}	증가율 ^{주1)}	2,357	증가액 ^{주2)}	증가율 ^{주2)}	2,860	증가액 ^{주3)}	증가율 ^{주3)}
			837	41.4		△503	△17.6		503	21.4

- ※ 주1) 당초 대비 1차변경에 따른 증가액 및 증가율
- 주2) 1차변경 대비 2차변경에 따른 증가액 및 증가율
- 주3) 2차변경 대비 3차변경에 따른 증가액 및 증가율
- 자료근거 : 체육정책과-6524 (‘18. 6.1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법정사항인 바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한 이력이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체육정책과-2135 (‘18. 2.21) “2018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다음으로 여유자금 예치의 경우, 현행보다 378.4%, 34억 9,600만원을 증액한 44억 2,200만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맡겨둔 34억 9,600만원을 찾아와 체육진흥기금의 통장에 넣어두고 하반기 수요에 수시로 즉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나
 - 예치금을 현행보다 일시에 378.4% 증액하는 것은 잠재적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지출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기금운용부서에 부여하는 결과일 수 있어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기금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되는 바
 - 입법취지에 따라 동 기금에 대한 하반기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원포인트 지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 지출하는 기금운용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예치금의 경우에도 두 차례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치금 지출규모를 20% 이상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⁵⁾

5)•체육정책과-2135 ('18. 2.21) “2018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체육정책과-3194 ('18. 3.19) “2018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표 2-4〉 보전지출(예치금) 지출계획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

당 초	1 차 변 경 (’18. 2. 8 심의)		2 차 변 경 (’18. 3.13 심의)		3 차 변 경 (안) (’18. 5.11 심의, 의회안건 제출)	
	증가액 ^{주1)}	증가율 ^{주1)}	증가액 ^{주2)}	증가율 ^{주2)}	증가액 ^{주3)}	증가율 ^{주3)}
1,133	270	△863 △ 76.2	923	653 242.1	4,420	3,496 378.4

※ 주1) 당초 대비 1차변경에 따른 증가액 및 증가율

주2) 1차변경 대비 2차변경에 따른 증가액 및 증가율

주3) 2차변경 대비 3차변경에 따른 증가액 및 증가율

자료근거 : 체육정책과-6524 (’18. 6.12)